

방화범죄의 추세와 문제점 및 대책

우리나라의 화재는 연간 3만 건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방화로 인한 화재건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화재 중 방화의 비율은 약 11~12%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연간 약 2,200명 수준이다.





글 | 김성삼
금융감독원 화재조사팀장

1. 머리말

가. 방화의 정의

방화란 특정 목적물에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불을 질러 연소시키는 행위와 함께 화력에 의해 물건을 태워 손상이라는 결과가 도출됐을 때 방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불을 지르는 행위와 태우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화를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강도 등과 더불어 4대 강력 범죄로 분류하고 있고 방화죄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나. 방화의 규모 추정

우리나라의 화재는 연간 3만 건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방화로 인한 화재건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화재 중 방화의 비율은 약 11~12%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연간 약 2,200명 수준이고 이중 22%정도가 사망 피해이며 사망자중 31%가 방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의 규모는 소방방재청 추산 1,500억 원 정도이나, 이

는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수치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금액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산불 및 문화재, 기타 보험 미가입 피해물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나,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화재보험금만 연간 4,700억 원을 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간 물적 피해액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중 방화로 인한 물적 피해액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현장요원들의 감각적 추정에 의하면 약 30% 수준인 1,400억 원 내외이고, 소방방재청이나 학술기관의 추정에 의하면 12% 수준인 연간 약 560억 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방화의 조사

가. 초동 조사의 중요성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방화범죄는 조사 또는 수사가 아주 어려운 범죄이다. 그 이유는 물적 증거물이 대부분 소실되기 때문이다. 또한 방화로 인한 화재임이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동 방화가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방화는 초기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일부 자료에 의하면 방화범죄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거된 건수의 비율이 91.6%를 차지하고 있어 초기조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 표 1 ● 검거기간별 방화범죄현황

(단위 : 건)

구 분	방 화
3일 이내	353(72.3%)
30일 이내	94(19.3%)
6개월 이내	23(4.7%)
6개월 이상	18(3.7%)

나. 방화의 동기

독일의 대표적인 학자 그래스버거(R.Grassberger)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방화가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현재에도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보험사기가 주요한 방화 동기라는데 이견이 없다.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첨단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공식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 (1) 기업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
- (2) 낡은 상품의 처분
- (3) 사업상의 파산이나 재정적 실패의 회피
- (4) 주문의 취소 또는 상품의 결함, 유행의 변화로 인한 제품 처분
- (5)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구조상의 변화를 요하는 건물 처분
- (6) 보수비 및 개조비가 고가인 장비나 기계의 처분
- (7) 상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시키는 비용 절감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장부상의 물적가치와 실제가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물적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동기는 최근의 방화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화재관련 조사기관

현재 국내 화재사고 발생 건수는 연간 약 3만 건으로 추산되나, 전국 경찰의 전문 감식요원은 80여 명에 지나지 않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정 관련연구원은 총 15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소방서의 경우에도 단순 화재원인조사에만 치중하고 있고, 설사 방화라 할 지라도 보고서상 방화추정이라고 표기할 뿐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방화여부 조사에 한계가 있다. 또한 화재보험을 담당하는 손해사정회사도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화재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화된 회사는 소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3. 방화의 특징

가. 방화범의 특징

방화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범죄이다. 연구에 의하면 방화범에는 초범자가 많으며 이들은 체포되기까지는 방화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으나 통계적으로 형사처벌 후에는 재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방화방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효율적인 수사과 검거일 것이다.

나. 방화범죄의 범죄적 특성

(1) 사기적 보험계약의 체결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시 특정사실 은폐, 중복계약, 소득과 비교하여 고액의 보험가입 금액의 책정, 실효계약의 증액 부활 등의 형태를 보인다.

(2) 경제상황과 밀접한 영향

방화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구업계, 고급식당, 성인오락실 등 사치 오락업종이 경기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이 보험사기 성향을 자극 충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쉬운 전염성으로 인한 확산 및 증대



방화로 보험금의 편취가 성공하거나 동종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 동조·모방하려는 행동을 유발하고 있다.

(4) 높은 지능 및 죄의식 결여
방화는 자신의 소유건물이나 동산에 손실을 입히게 되므로 대부분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방화를 숨기기 위하여 교묘한 수법의 연구와 알리바이 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5) 수사 및 조사의 어려움
방화라는 것이 확인되어도 보험계약자와 방화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4. 방화의 문제점 및 대책

가. 문제점

(1)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미흡

화재 발생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관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소방서, 경찰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각종 감정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 간에는 화재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전문분야별로 공동으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구심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통계의 부정확성

화재관련 통계는 그 원인분석과 예방을 위한 정책 등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방화의 경우 경찰은 1,800여 건, 소방은 3,300여 건이며, 연간 화재 피해액도 터무니없게 축소 발표되고 있다. 또한 원인별 분석도 대부분 추정으로 표기되는 등 예방이나 정책 결정을 하는데 거의 무의미한 형편이다.

(3) 전문 인력의 부족 및 조사업무의 비과학화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첨단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

구소 등 공식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선 화재 현장에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도 드물며, 투입된다 할지라도 원시적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이다.

(4) 연구개발 인프라의 취약

방화로 인한 화재를 강력한 범죄로 취급하는 것과는 달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자격증 제도의 활성화 등 기초 인프라는 상당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나. 대책

(1) 소방당국과 보험당국간의 핫라인(Hot-line) 구축

화재 발생시 경찰과 소방서간에는 긴급연락방안이 구축되어 있으나 보험과는 아무런 정보교류 채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화재원인 조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투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관련 기관간의 상호 배타적 의식이 상당부분 남아 있는 듯하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화재 초기단계에서 상호 정보교환채널을 상시화하고 화재원인조사를 위하

여 즉각적인 관련기관간의 가칭 '화재현장조사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정책의 일원화 추진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우선순위가 존재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통계적 변수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하여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명확화 측면에서도 애매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행히 최근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상당한 기대를 해본다.

(3) 민간 전문인력의 활용 및 장비의 현대화

화재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적인력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간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및 전문 자격증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또한 화재조사현장에 첨단장비의 보급과 지원을 통하여 좀더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4) 연구개발 지원 및 포상제도의 도입

소방방재청이나 보험업계는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학회 등에서 방화 관련 연구실적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근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홍보하는 등 장기적인 예방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W)

